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 · 신장식 · 정춘생

임호선 · 김문수 · 김재원

황운하 · 김준혁 · 김준형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결여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 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위 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행법에 따른 위기청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실태 파악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 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학업수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부처나 교육기관의 지원조치도 필요한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5호 중 "가정 내"를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경제· 문화 또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 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로하고, 제5장에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학교 또는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2(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

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5. -----위기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신 설> 5의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 ·경제·문화 또는 심리적 원 인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 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 업이나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 소년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6. (생략) 제16조의2(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신 설> 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은둔 상태에서 벗어 나 학교 또는 사회에 원만히

<신 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가 족지원서비스)(생략)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복 지지원) (생 략)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 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 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 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제18조의2(위기청소년 학교 복귀 ·적응 지원) 교육부장관, 교육 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위 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 귀 또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필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족지원서비스) (현행 제18조의2 와 같음)

지지원) (현행 제18조의3과 같 음)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 육지원) (생략)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 업체험 및 취업지원)(생략)

육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 음)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 업체험 및 취업지원) (현행 제1 8조의5와 같음)